

「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」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

- 사업명 :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
- 협약기간 : 2024. 3. 1. ~ 2024. 12. 31.
(경과조치)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협약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
- 총 사업비(대구대 교비 포함) : 금4,400,000원(금사백사십만원)
※ 대구시교육청 지원액: 금3,000,000원(금삼백만원)
- 협약 당사자 : 대구광역시교육청, 대구대학교 사범대학

‘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’ 사업 수행에 관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‘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의 범위)

본 협약을 통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은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며, 수행할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①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(전공, 교직과목 등)
- ②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참여 학생 지원(실습비 지원 등)
- ③ 교육청-교원양성기관 협업 지역 밀착형 교원양성 교육과정 모델 연구
- ④ 교육청-교원양성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(협의회 등)
- ⑤ 실습협력학교 및 교원의 실습지도 역량 강화 지원 등
- ⑥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지원 등

제3조(사업비의 지급)

- ①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사업비를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급하며, 이때 산학협력단 간접비는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3 이내로 한다.
- ② 정부 예산의 변경, 관련 법령의 개정, 정부의 정책 변경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이 협의하여 최초 안내한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)

- ①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은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지급받은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 기간 내에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의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)

- ①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은 본 사업을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교육청에게 사업 완료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게 귀속된다.
- ③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이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물품 또는 재산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에게 귀속된다. 다만, 교육청과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의 협의 하에 처리 방안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④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이 사업 수행 중 제작·개발한 사업 성과물의 저작권은 대구대학교 사범대학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소유한다.

제6조(협약 또는 사업의 변경)

- ①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은 변경된 협약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은 사업비를 전용하여야 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게 전용 내용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특별히 정한 지침이 있을 경우 그 지침을 우선으로 한다.
- ③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게 사업기간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승인에 의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

- ① (신의성실)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은 본 협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.
- ② (관계법령의 준수)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(상호협조)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)

- ①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- ②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 - 가.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나. 사업의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다.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거나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등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 - 라.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③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본 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대구광역시교육청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, 1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약의 해석 및 효력)

- ① 본 협약에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.
- ② 본 협약은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이 대구광역시교육청에게 협약서 작성을 요청하고,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협약서를 공문으로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에게 회신함으로써 체결된다.

[붙임]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사업 계획 1부.

2024년 월 일



대구광역시교육감



대구대학교 사범대학장

※ 업무협약서 공문 회신으로 직인 날인을 대신함